

# 2015년도 **달라지는 행정제도**





# - 목 차 -

1.	일반행정분야	1
2.	산업ㆍ경제분야	5
3.	문화·체육·관광분야	8
4.	농정·축산·산림분야 ······	11
5.	보건·복지·여성분야	17
6.	환경분야	20
7.	도시·교통분야	23
8.	재난안전분야	28



제 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설치	< 신 규 >	●경기북부지역(의정부)에 북부연구센터 개소 - 경기북부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- 남북교류, DMZ. 접경지역 연구	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('15.1.1.)	기획조정실 (미래전략담당관)
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	〈신 규〉	<ul> <li>국내·국제경기대회 및 축제·행사 유치신청 전, 공모사업 공모 전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</li> <li>국내·국제경기대회 및 축제·행사 :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</li> <li>공모사업 :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,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</li> </ul>	지방재정법 제27조의6 ('14.11.29.)	기획조정실 (예산담당관)
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	• 연 3회 - 1차 : 1월~3월 - 2차 : 5월~7월 - 3차 : 8월~10월	<ul> <li>연 4회</li> <li>1차: 12월~2월, - 2차: 3월~5월</li> <li>3차: 6월~8월, - 4차: 8월~10월</li> <li>심사제외 사업 추가: 수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용수개발,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, 출자·출연기관 설립사업</li> </ul>	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('14.11.28.)	기획조정실 (예산담당관)
지방보조금제도	<ul> <li>보조금 교부</li> <li>사업비 : 도가 권장하는사업</li> <li>운영비 :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</li> <li>공모 : 사회단체보조금</li> </ul>	<ul> <li>지방보조금교부 및 성과평가</li> <li>모든 지방보조금 공모 후 사업자 결정</li> <li>운영비 :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</li> <li>사업비 : 조례에 직접적 근거가 있는 경우('16년 시행)</li> <li>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신설 : 보조금예산편성, 보조금 조례안 의회 의견 제출, 재원분담사항 결정, 보조사업 유지여부 결정</li> </ul>	지방재정법 17조 제32조의 2 ~ 제32조의 10 예산편성운영기준 ('15.1.1)	기획조정실 (예산담당관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주민참여예산 제도	< 신 규 >	<ul> <li>주민의견 수렴결과 의견서 지방의회 제출</li> <li>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</li> <li>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그 의견서를 첨부</li> </ul>	지방재정법 39조2항 ('14.11.29.)	기획조정실 (예산담당관)
중기지방재정 계획	〈신 규〉	<ul> <li>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(불가피한 사유*가 있는 경우 제외)</li> <li>* 천재지변, 법·제도의 변경,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계획 수립 당시 예측 불가능한 경우</li> </ul>	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 ('15.1.1.)	기획조정실 (예산담당관)
지방재정공시	●연 1회 - 1차 : 8월(결산기준 공시)	●연 2회 - 1차 : 2월(예산기준 공시) - 2차 : 8월(결산기준 공시)	지방재정법 제60조1항 ('14.11.29)	기획조정실 (예산담당관)
예산의 성과관리제도	'08년부터 시범작성	•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제출 - 사업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	지방재정법 5조 및 제44조의 2 ('14. 11. 29) 예산편성운영기준	기획조정실 (예산담당관)
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운영	●행정심판 접수 - 방문・우편 접수	●행정심판 방문·우편·인터넷 접수 및 처리시스템 개선 -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 가능 - 사건처리 단계별 진행사항 실시간 안내	행정심판법 제52조 및 제54조 ('15.1.1)	기획조정실 (법무담당관)
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	〈신 규〉	•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- 내 용 :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- 지급대상 : 한국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이법 시행일 3년 전까지 피해자 및 그 유족 ※ '53.7.27.~'12.4.15. 기간 중 피해를 입은 자	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 ('15.4.16.)	균형발전기획실 (군관협력담당관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근무성적평정 제도 변경	<ul> <li>근무성적평정시기 조정</li> <li>현행 근무성적평정시기 6월, 12월</li> <li>→ 근평 시기(6월, 12월)와 부서장 인사이동 시기 중첩으로 내실있는 근무성적평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</li> </ul>	- 시 행 : 2015년 하반기 근평부터 적용(7월~11월)	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, 제32조 ('15.7.1.)	자치행정국 (인사과)
법인지방소득세 주요개정	<ul> <li>(폐지) 법인지방소득세 신고</li> <li>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4개월 이내 납부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</li> <li>법인세 세액 결정·경정 시, 수정신고 기한은 법인세 신고 로부터 1개월 이내</li> <li>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세 액의 1/10미달 시 해당 사업 연도 지방소득세액에 가감</li> </ul>	지자체 신고·납부 (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) ※ 신고 시 첨부서류 :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,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, 재무상태표, 포괄손익 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, 세무조정계산서 등 - 법인세 세액결정·경정, 수정신고 시 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 기한과 동일	지방세법 ('15.1.1.)	자치행정국 (세정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출납폐쇄기한 단축	• 출납폐쇄기한 - 다음연도 2.28.까지	<ul> <li>출납폐쇄기한 단축</li> <li>다음연도 2. 28. → 당해연도 12. 31.</li> <li>→ 각종 용역, 물품구매 등 계약과 대가의 지급에 있어 12. 31.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다음연도 2. 28.까지 지출 할 수 있었던 것을 정부회계기준에 맞추어 당해연도 12. 31.까지 지출하도록 변경 ※ 회계연도(매년 1. 1. ~ 12. 31.)와 일치시킴</li> </ul>	지방재정법 제8조 ('15.1.1.)	자치행정국 (회계과)
옴부즈만 운영	〈신 규〉	<ul> <li>옥부즈만 운영</li> <li>기법 ·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 ·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</li> <li>구성인원 7명, 2년 1회 연임, 비상임 명예직</li> <li>주요임무</li> <li>고충민원 조사 · 처리 ▷ 시정권고 · 의견표명 · 조정</li> <li>기법 ·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등</li> </ul>	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('15. 1월)	감사관실 (조사담당관)

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도 직접고용 근로자 생활임금 시행	〈신 규〉	•도 직접고용 근로자(기간제 및 무기계약직)의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임금 지급 - 기존 임금 대비 110~120% 보수인상 검토('15.2월말 확정)	경기도 생활임금 조례	경 제 실 (일자리정책과 <del>)</del>
최저임금	● 시간급 5,210원 -일급(8시간) 41,680원	●시간급 5,580원, 일급(8시간) 44,640원	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-29호 ('15.1.1.~12.31)	경 제 실 (일자리정책과 <del>)</del>
동두천 고용복지 <sup>†</sup> 센터 운영	〈신 규〉	●서비스지역 : 동두천,의정부,양주,포천,연천+강원 철원 서비스분야 : 고용센터+새일센터+지역자활센터+일자리센터 +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	동두천 고용복지 <sup>†</sup> 센터 개소 (14.12.24.)	경 제 실 (일자리정책과)
외국인 채용 및 취업신고 절차 일원화	<ul> <li>외국인 채용 시 고용노동부에 '근로개시' 신고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'취업개시' 신고 각각 이행</li> </ul>	●근로개시·취업개시신고 일원와 개선 - '14 10 13의부터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축인국과리	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'14.9.30.)	경 제 실 (일자리정책과)
상가임대차분쟁 조정 추진	〈신 규〉	<ul> <li>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 권리금 분쟁발생시 조정</li> <li>분쟁조정위원회(9명)를 경기도에 설치하여 중재추진</li> <li>※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후 시행</li> </ul>	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개정시 ('15.7.1.)	경 제 실 (사회적경제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mark>근 거</mark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	〈신 규〉	<ul> <li>지원대상자 : 신용회복절차진행자, 소액채무자, 재단구상권업체, 연체정리자</li> <li>특례보증개요 : 총규모 100억원, 보증료 1.0%, 보증기한 3년 (만기일시상환), 보증비율 100%,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(회생지원보증 포함)</li> </ul>	경기도 자체계획 ('15.1월)	경 제 실 (기업지원과)
		※ 재도전심사위원회에서 대표자가 직접 사업계획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		
G-슈퍼맨 펀드 조성 · 운영	〈신 규〉	<ul> <li>(투자원칙) 아이디어・기술・사업화 가능성을 믿고 과감한 투자 - 업종에 관계없이 투자, 초기기업 위주 발굴</li> <li>(출자자간 관계) 손실 발생 시 경기도 출자금액 우선 손실처리 - 경기도가 모험투자 역할 선도, 민간의 출자 참여 독려</li> <li>(펀드규모) 민산6기 800억원(도200, 민간600) / 매년 200억원 조성 - '15년 스타트업 펀드(200억원-도50/민간150) 결성 추진 → 운영하면서 연차적 확대 여부 검토 등 추진</li> </ul>	경기도 자체계획 ('15.2월)	경 제 실 (기업지원과)
중소기업의 강소·중견 기업화 지원 (G-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)	<ul> <li>필수요건 : 기업체 구분없이 연매출 20억원 이상, 연구 전담부서운영 중소기업체</li> <li>선택요건 : R&amp;D 투자 3%이상, 수출액비중 30%이상, 연평균 매출증가 15%이상 중 1가지 충족 기업체</li> <li>지원규모 : 직접지원 1년 + 연계지원 2년, 업체당 최대 60백만원(자부담 40% 별도)</li> </ul>	<ul> <li>·필수요건 : 지식서비스산업체 연매출 50억원 이상, 일반기업체 연매출 100억원 이상, 연구전담부서 운영 중소기업체</li> <li>·선택요건 : 종전과 종일</li> <li>·지원규모 : 직접지원 최대 2년 + 연계지원 1년, 업체당 최대 2억원 지원(자부담 40% 별도)</li> </ul>	경기도 자체계획 ('15.1월)	경 제 실 (기업지원과)

제 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굿모닝(사회공헌) 경기 기업 선정/지원	〈신 규〉	●사회공헌실적이 있는기업이미지 마케팅을 통한 매출 증대 도모 - (사업량) 도내 중소·중견기업 10개사 이내 - (제공 인센티브) 굿모닝 기업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G-버스 홍보(8,000대), 디자인 개발 지원 등	경기도 자체계획 ('15.1월)	경 제 실 (기업지원과)
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	<ul> <li>지원규모 : 2조 5천억원</li> <li>자금 1조원, 보증 1조 5천억원</li> <li>융자금리</li> <li>기금융자 : 4%</li> <li>협조융자 : 시중은행 금리 적용, 이차보전 지원</li> <li>※ 이차보전율 : 금리구간별 차등 지원</li> </ul>	• 융자금리 - 기금융자 : 3.58% - 협조융자 : 시중은행 금리적용, 이차보전 지원 ※ 이차보전율 : 금리구간별 차등 지원	경기도 자체계획 ('15.1월)	경 제 실 (기업지원과)
가구인증센터 설립 운영	〈신 규〉	•사업기간 : 2014 ~ ※ 2015. 3월 개소식 예정 •위 치 : 포천시 자작로 155 경기대진TP 內 설치(시험동) •사업규모 : 연면적 500㎡(1층) •사업 비 : 15억(도비 9억, 시비 6억) •사업내용 : 도 내 가구기업 가구인증(KC, KS 등) 지원사업 및 R&D사업 추진	경기도 자체계획 ('14.10월)	경 제 실 (특화산업과)

### 3 문화·체육·관광분야

제 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야영장업 신설,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조건 완화	< 신 규 >	•야영장업에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분류 - 일반야영장업 등록조건 : 1면당 15㎡이상 확보 등 -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조건 : 1면당 50㎡ (종전 80㎡), 차로 1차선 (종전 2차선), 또는 교행가능 등	관광진흥법 시행령 ('15.1.29.)	문화체육관광국 (관광과)
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등록제 폐지 (자유업종 전환)	<ul> <li>관광진흥법 상 관광객이용시설업 세부업종으로 외국인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 규정</li> <li>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등록기준 및 처벌규정 명시</li> </ul>	●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 관련규정 삭제에 따른 등록제 폐지(자유업종 전환)	관광진흥법 시행령 ('15.1.1.)	문화체육관광국 (관광과)
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설치	< 신 규 >	●경기북부지역(의정부)에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개소 - 취약한 북부지역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- DMZ등 북부 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	문화예술진흥조례 ('15.1.1.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도지사 관사 문화예술 프로그램 시행	< 신 규 >	<ul> <li>경기도지사 관사를 개방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</li> <li>역대 도지사 연대기, 기념품 등 전시</li> <li>벽화, 포토존 조성, 조각품 설치 등 지역명소화</li> <li>시낭송회, 인문학강좌, 배려계층 초청 작은음악회 등 연중 개최</li> </ul>	문화예술진흥조례 ('15.1.1.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북부 문화창조허브	< 신 규 >	<ul> <li>전통제조업과 문화콘텐츠의 융·복합 문화콘텐츠 발굴 및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경기북부 문화 및 경제 활성화 추진</li> <li>- (소재지) 의정부(대한석탄공사 빌딩 3개층, 1,398.87㎡)</li> <li>- (지원목표) '19년까지 2,500개 스타트업 기업 지원(연간 500개)</li> </ul>	경기도 자체계획 ('15.1.1)	문화체육관광국 (콘텐츠산업과 <del>)</del>
경기 민속문화의 해 운영	< 신 규 >	<ul> <li>「2015년 경기민속문화의 해」 사업 추진</li> <li>경기도와 국립민속박물관 공동추진(경기문화재단 주관)</li> <li>경기민속문화의 해 선포식, 경기민속 학술조사 및 심포지엄, 민속행사, 특별전 전시(경기도 전역) 등</li> </ul>	문화예술진흥조례 ('15.1.1.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	< 신 규 >	<ul> <li>청년창작소 조성 및 운영</li> <li>- 문화관련 청년 창의 공간 조성(남부권 1개, 북부권 1개)</li> <li>- 청년 문화 일자리 사업 지원</li> </ul>	문화예술진흥조례 ('15.1.1.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마을공동체 문화공간 조성	< 신 규 >	<ul> <li>마을공동체 문화공간 조성</li> <li>- 마을동네 목공장 조성 및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문화예술 교육지원</li> </ul>	문화예술진흥조례 ('15.1.1.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생활체육 야구장 조성	< 신 규 >	<ul> <li>사회동호인 야구팀 증가추세에 맞추어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야구 인프라 확충</li> <li>생활체육야구장 4개소 건립(가평, 부천, 화성, 고양)</li> </ul>	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
주민밀착형 동네형 체육시설	< 신 규 >	●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소규모 체육시설 다수건립 및 주민 자치확대 - 동두천, 연천 각 1개소	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세계유산남한산성 관리조례 제정	< 신 규 >	●남한산성 체계적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- 남한산성 보존·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- 세계유산 남한산성 관리위원회 및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설치 등	세계유산남한산성 관리조례 ('15.1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유산과)
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운영	< 신 규 >	<ul> <li>문화기술(CT)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, 전문 인력양성,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연계 지원 위해 수원 판교에 센터개소</li> <li>(위치) 수원(광교테크노밸리 內 비즈니스센터 1개층, 1,012㎡)</li> <li>(목표) 문화기술(CT)을 활용한 융·복합 문화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, 일자리창출 등 블루오션 선점 / 판교, 광교, 동탄을 잇는 신규 클러스터 조성</li> </ul>	경기도 자체계획 ('15.1.1.)	문회체육관광국 (콘텐츠산업과)

#### 4 농정·축산·산림분야

제목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식염의 원산지표시 대상	<ul> <li>수산물에 천일염, 정제소금으로 단순가염, 염장(염수장) 한 경우 식염은 원산지 표시대상 제외</li> </ul>	●염장 또는 단순가염 수산물에 사용되는 식염(천일염, 정제소금)도 원산지 표시 대상	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('15.1.1.)	농정해양국 (농식품유통과)
쌀소득등보전 직불제	●지급단가 - 1ha당 평균 90만원 (진흥지역 970,187원, 비진흥 지역 727,640원)	• 지급단가 - 1ha당 평균 100만원 (진흥・비진흥 지역 세부단가는 '15년 상반기 중 확정 발표)	2015 쌀소득등보전 직불제사업지침 ('14. 12월말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밭농업직불제	<ul> <li>지급대상품목 제한(53개품목)</li> <li>지목상 밭(田)에 재배하는 밭작물(29개품목)</li> <li>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동계 작물(24개품목)</li> </ul>	●지목제한 폐지 ●품목제한 폐지	2015 밭농업 직불제사업지침 ('14. 12월말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친환경농업 직불제	●유기인증 농가 직불금 지급 기간 : 5년	<ul> <li>유기인증 농가 직불금 지급기간 : 8년</li> <li>기존 유기인증 직불금 : 5년간 지급</li> <li>유기인증 농가에 "유기지속 직불금" 신규 도입, 3년간 직불금 추가 지급(직불금 단가의 1/2)</li> </ul>	2015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지침 ('15년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유기농자재 지원	● 지원자재 - 농촌진흥청에서 공시하는 유기농자재	●지원자재 확대 - 농촌진흥청 공시 유기농자재 외에 녹비작물 종자 포함	2015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지침 ('15.1.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	●지원사업 : 2개사업 -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-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●지원기간 : 1년	<ul> <li>지원사업 : 1개사업으로 통합(친환경농업지구 조성)</li> <li>※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폐지</li> <li>지원기간 : 최대 3년</li> </ul>	2015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지침 ('15.1.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첨단온실 건축지원	● 지원내용 - 첨단온실 신축 - 귀농업인 자동화 온실 (661㎡∼20,000㎡ 지원)	●지원내용 - 첨단온실 신축 + 증개축 - 귀농업인은 증개축 면적제한 없음	2015 첨단온실 건축지원사업지침 ('14. 12월말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한시어업허가	•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된 어선에 겸업으로 허가	● 허가된 어선 또는 어구에 겸업으로 허가	수산업법 제42조 ('15.3.25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선복량 기준 상향 조정	●근해어선 선복량 기준 8톤이상	<ul> <li>어선원 복지 향상과 어선안전사고 예방 공간 확보 위해 선복량을 총톤수 8톤이상에서 10톤이상으로 상향 조정</li> </ul>	수산업법 제41조 ('15.3.25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과징금 상한 조정	●과징금 상한 2천만원	•어업면허 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 으로 상향 조정	수산업법 제91조 ('15.3.25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해적생물 구제도구 종류와 사용방법	<신 규>	<ul> <li>패류양식장에 서식하는 해적생물 구제도구 종류와 사용 방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</li> </ul>	수산업법 제8조 ('15.3.25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
제목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인공어초시설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개정	●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 규정 개정	<ul> <li>바다목장과 인공어초 설치 사업간 중복여부 검토의견서 첨부조항(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→ 지자체) 신설</li> <li>인공어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·운영 조항 신설</li> </ul>	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('15.6월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	●보조+융자사업 이자율 인하	●준전업농 <sup>~</sup> 전업농 규모 농가의 융자금 이자율 1% 인하 - 변경 : 3% → 2%(1% 인하)	축사시설현대화 지침 ('15.1월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축사시설현대화	●지원 대상자 축산업등록 기준일 조정	● 축산업등록 기준일 조정 - 변경 : '11.12.31 이전 등록 → '14.12.31 이전 등록	축사시설현대화 지침 ('15.1월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	●축종별 전업농 범위 및 상한액 조정	• 한우 전업농 범위 및 지원 상한액 변경 - 변경 : 50두 → 80두 - 보조+융자 : 3억원 → 499백만원 - 이차보전 : 4억원 → 15억원	축사시설현대화 지침 ('15.1월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	●사업비의 용도 확대	●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서 설계비, 감리비 지원	축사시설현대화 지침 ('15.1월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	●HACCP 인증 요건완화	●사업종료 후 HACCP 인증 의무기간 완화 - 변경 :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→ 사업종료 후 2년 이내	축사시설현대화 지침 ('15.1월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가축분뇨	< 신 규 >	●가축분뇨 소규모공동자원화사업 - 대상 : 에너지화 - 총사업비 : 40억원	농림사업시행지침 ('15.1.1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공동자원화사업	●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선정 - 기존 : 시.도	●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선정 - 변경 : 시·도 → 농식품부	농림사업시행지침 ('15.1.1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가축분뇨 처리사업	• 가축분뇨 처리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< 추 가 >	<ul> <li>가축분뇨 처리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</li> <li>가축분뇨법에 따른 관리대장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자</li> </ul>	농림사업시행지침 ('15.1.1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Al방역체계 개선	• 방역대 설정 - 500m이내, 500m ~ 3km이내 3km ~ 10km	•일률적인 방역대 설정 → 방역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AI 확산 위험분석 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 - 위험분석 : 지형조건, 역학특성, 축산업형태, 야생조수류 서식 실태분석 등	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('15년 상반기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	• 방역대내 가금 및 알 이동제한	<ul> <li>(가금)닭(보호지역) 반·출입금지 → 도축장 출하가능 오리(보호지역) 반·출입금지 → 도축장 출하가능</li> <li>(종란)닭(보호지역) 폐기 → 가공용 가능 오리(보호지역) 폐기 → 가공용 가능</li> <li>(식란)닭(보호지역) 폐기 → 가공용 가능 오리(예찰지역) 폐기 → 가공용 가능</li> </ul>	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('15년 상반기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	●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 (Standstill)	●명령 발동시기 - 확산우려 시 → 최초발생 또는 확산우려 시	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('15년 상반기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	●철새 AI 위험 알림 시스템 운영	● AI 발생국 경유 철새가 철새 군집지 도래시 농가에 신속히 알리는 "철새 AI 위험 알림 시스템"운영	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('15년 상반기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	●AI 방역관리지구 설정 관리	<ul> <li>철새군집지 중 AI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과 가금 사육이 밀집되어 있어 AI 발생시 파급영향이 큰 지역을 "AI 방역 관리지구"로 지정하여 특별관리</li> </ul>	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('15년 상반기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AI방역체계 개선	●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	<ul> <li>소속농가에 대하여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하여</li> <li>시행토록 하는 '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' 신규 도입</li> </ul>	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('15년 상반기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	●AI 정밀진단	●AI 정밀진단기관 권한 확대 - 농림축산검역본부 → 시도가축방역기관 (시설, 장비, 인력 등 요건 구비 후 지정)	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지침 ('14.12.8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살처분보상금 산정기준 변경	<ul> <li>가금 축종구분</li> <li>종계, 실용계로 구분</li> <li>토종닭종계 산정기준</li> <li>25주령이상~68주령미만</li> <li>종계·종오리 인정</li> <li>검정확인서가 있을 경우</li> <li>종란인정</li> <li>종계, 종오리, 종축용 메추리 에서 생산된 알</li> </ul>	<ul> <li>가금 축종구분 확대</li> <li>종계, 원종계, 실용계로 원종계 부분 추가</li> <li>토종닭종계 산정기준 주령 변경</li> <li>68주령을 80주령으로 변경</li> <li>종계·종오리 인정방법 보완</li> <li>20주령 이내는 육종회사·원종계(오리)장 계통보증서도 인정</li> <li>종란 인정범위</li> <li>종계, 종오리, 종축용메추리에서 생산된 알 중 육종회사 또는 원종계, 원종오리장 등에서 생산한 씨알만 인정</li> </ul>	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 ('14.12.1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유가공업 HACCP 의무화	● 축산물가공업(유가공업) HACCP 의무화 확대 시행	●연매출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51명 이상인 업소	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('15.1.1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축산물의 표시사항	● 축산물가공업 HACCP 인증 마크 변경	● HACCP 인증 마크 표시 변경	안전관리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('15.1.1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축산물 이력관리	• 법률명 -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	<ul> <li>법률명 <ul> <li>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</li> </ul> </li> <li>돼지고기 이력관리의 효율적 추진 <ul> <li>농장식별번호 표시 의무화</li> <li>돼지의 이동, 사육 현황(매월) 등의 신고 의무화</li> <li>도축업자, 식육포장처리업자, 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 번호의 표시, 거래명세서 기록 등의 의무화</li> </ul> </li> <li>식품접객업, 집단급식소, 통신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이력정보 게시 또는 표시 의무화</li> </ul>	(14.12.28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
#### 5 보건・복지・여성분야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	<ul> <li>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</li> <li>4인 가구 최저생계비 1,630,820원</li> <li>4인 가구 현금급여 1,319,089원</li> </ul>	<ul> <li>최저생계비 2.3%, 현금급여 기준 2.3% 인상('15.1~6월)</li> <li>4인가구 최저생계비 1,668,329원</li> <li>4인가구 현금급여 1,349,428원</li> <li>중위소득 기준 개별급여체계로 전환('15년 7월~)</li> <li>생계급여 중위소득 30%, 의료급여 중위소득 40%, 주거급여 중위소득 43%, 교육급여 중위소득 50%수준</li> </ul>	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42호 ('15.1.1.)	보건복지국 (무한돌봄 복지과)
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	< 신 규 >	<ul> <li>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 기준 등 의료기기의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하여금 그 기준 준수</li> </ul>	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, 별표 6의2 (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) 신설 ('15.1.1.)	보건복지국 (보건정책과)
국가예방접종 확대 실시	<ul> <li>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정기예방접종 무료 접종</li> <li>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</li> </ul>	<ul> <li>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정기예방접종 항목 확대</li> <li>총 14종(기존 13종 + 소아A형 간염 추가)</li> <li>* 14종 백신 : 디프테리아, 폴리오, 백일해, 홍역, 파상풍, 결핵, B형간염, 유행성이하선염, 풍진, 수두, 일본뇌염,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, 폐렴구균, 소아A형</li> <li>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</li> <li>기존(보건소 무료접종)→변경(민간지정병의원에서도 무료접종)</li> </ul>	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-3246 ('14.10.15.)	보건복지국 (보건정책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mark>근거</mark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금연구역 확대		<ul> <li>• 금연 구역 확대 : 100<sup>m<sup>2</sup></sup>이상 → 모든 음식점</li> <li>● 밀폐 차단된 흡연석 제도 폐지(2014.12.31.까지)</li> </ul>	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('15.1.1.)	보건복지국 (건강증진과)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	•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% 이하 저소득 계층	<ul> <li>지원대상</li> <li>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% 이하 저소득 계층</li> </ul>	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('15.1.1.)	보건복지국 (건강증진과)
난임부부 지원금 증액	● 난임부부 지원금 - 체외수정 : 신선배아(3회) 1회당 180만원 범위내	• 난임부부 지원금 증액 - 체외수정 : 신선배아(3회) 1회당 190만원 범위내	모자보건법 제11조 ('15.1.1.)	보건복지국 (건강증진과)
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 신고 가능	•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(푸드트럭) 영업신고 불가능	<ul> <li>자동차(푸드트럭)를 이용한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 신고 가능 장소 확대</li> <li>장 소: 유원시설('14. 8.18), 도시공원, 하천부지, 관광지 및 체육시설의 일정공간 추가확대('14.10.22)</li> <li>※ 이동하는 식품조리·판매업소 영업절차·위생·안전관리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(2014.11.12.)</li> </ul>	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('14.10.22.)	보건복지국 (식품안전과)
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	●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7만원 (12세미만 아동)	●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(12세미만 아동대상) 단가 인상 : '14년 월 7만원 → '15년 월 10만원	2015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 ('15.1.1.)	여성가족국 (여성가족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양성평등 기본법 제정시행	●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	<ul> <li>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'여성발전'에서 '양성평등실현'과 ' 성 주류화'로 전환되어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</li> <li>양성평등 정의규정 신설</li> <li>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 의무 규정</li> <li>성별영향분석평가, 성인지 예산, 성인지 통계, 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도입 등</li> </ul>	양성평등기본법 전면 개정시행 ('15.7.1)	여성가족국 (여성가족과)
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	<ul> <li>대체수단으로 보육수당 인정</li> <li>위탁계약의 보육아동 비율 30%</li> <li>의무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: 6개월간, 관보·복지부홈페이지</li> </ul>	· ·	영유아보육법 제14조 ('15.1.1.)	여성가족국 (보육정책과)

6

환경분야

제 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	< 신 규 >	• 미세먼지(PM10, PM2.5) 대기오염 예경보제 시행('15.1월) - 법적 근거 마련 시행	대기환경보전법 ('15.1.1.)	환경국 (기후대기과)
대기오염 예보 등급 구간 조정	<ul> <li>오염도 예보 등급 구간</li> <li>좋음, 보통, 약간나쁨, 나쁨, 매우나쁨 5단계로 구분</li> </ul>	<ul> <li>대기오염 예보제 등급 구간을 좋음, 보통, 나쁨, 매우나쁨</li> <li>4단계로 구분하여 약간나쁨 구간의 의미 혼돈을 예방</li> </ul>	대기환경보전법 ('15.1.1.)	환경국 (기후대기과)
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	< 신 규 >	<ul> <li>온실가스 배출량 125,000톤 이상 업체, 25,000톤 이상 사업장 대상 배출권거래제 시행</li> <li>각 업체별 할당량 초과분은 시장에서 구입 또는 자체적 으로 감축</li> <li>※ 전국 525개 업체 중 도내 84개 소재(본사 소재지 기준)</li> </ul>	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('15.1.1.)	환경국 (기후대기과)
대연물질 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왕 준변경	<ul> <li>배출시설 분류체계</li> <li>제2호 가목. 배출시설 적용기준</li> <li>제2호 나목. 배출시설 분류</li> <li>배출허용기준 일부 변경</li> <li>오염물질별 기준 신설 및 강화</li> </ul>	<ul> <li>배출시설 적용기준 및 분류 변경</li> <li>배출시설 범위(공정관리→시설관리)</li> <li>배출시설 14개 분류체계 일부변경, 경과규정 신설 '15.12.31일까지 인허가 유예</li> <li>배출허용기준 일부 변경</li> <li>가스·입자상물질 허용기준 신설 및 강화 등</li> </ul>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, 별표 8 ('15.1.1.)	환 경 국 (환경안전 관리과)
유독물 영업등록 변경	●인허가 형태: 등록 → 허가 ●인허가 주체: 시·도지사 → 환경부장관	<ul> <li>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취급시설에 대한 장외 영향평가와 전문기관의 설치검사를 득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영업허가 신청.</li> </ul>	화학물질관리법 ('15.1.1.)	환 경 국 (환경안전 관리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가축분뇨 처리시설 환경성검토 완화	●가축분뇨 100㎡/일 이상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수행	<ul> <li>퇴비화(무방류) 가축분뇨 처리시설 환경성검토 완화 당초(환경영향평가), 변경(소규모환경영향평가)</li> </ul>	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제1항 ('14.11.11.)	수자원본부 (수질관리과)
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	〈신 규〉	<ul> <li>(사업목적) 비용부담 등으로 수용가 자체적으로 개량이 어려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비용지원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</li> <li>(사업개요) <ul> <li>사업기간: 2015년 ~ 2018년</li> <li>사업 량: 20년 경과 노후주택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20만 세대('15년도 2만 세대)</li> </ul> </li> <li>(지원기준) <ul> <li>규모별 차등 지원 : 면적 60㎡ 이하 80%, 85㎡ 이하 50%, 130㎡ 이하 30% 지원</li> <li>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가 주택은 전액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자체계획 ('15.1월)	수자원본부 (상하수과)
먹는 샘물생쉬 제조공장내 탄산수 제조 허용	<ul> <li>먹는샘물 제조공장</li> <li>내에는 다른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</li> </ul>	<ul> <li>먹는샘물 제조공장내 탄산수 제조시설 설치 가능</li> <li>- 먹는샘물 제조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 공동사용 가능</li> </ul>	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('14.11.28.)	수자원본부 (상하수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일부 소규모 생계형 공장 입지규제 개선	●취수지점 4km 초과 7km 이내 지역 공장 입지 금지	<ul> <li>취수지점 4km 초과 7km 이내 지역 조건부 입지 가능</li> <li>→ 떡, 빵류, 코코아・과자류, 면류・마카로니, 커피 가공업 공장으로서</li> <li>유독물 미취급 공장</li> <li>유질・대기 배출시설 미대상</li> <li>광유류 미포함 폐수를 공공(개인)하수처리시설 유입 처리</li> <li>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</li> <li>바닥면적 500㎡ 미만 공장</li> <li>6월 이상 실 거주자</li> </ul>	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시행규칙 제2조의2 ('14.12월)	수자원본부 (상하수과)

## 7 도시・교통・건설분야

제 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경기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폐지	건축분쟁전문위원회(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·도시자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.)	<ul> <li>건축분쟁전문위원회(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.)</li> </ul>	건축법 제4조 ('14.11.29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건축민원전문위원 신설	< 신 규 >	● 질의민원을 심의하는 광역·기초 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	건축법 제4조의4 ('14.11.29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지인과)
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확대	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	●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	건축법 제13조 ('14.11.29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대상 확대	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상에서 제외	●신고 대상 건축물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포함	건축법 제27조 ('14.11.29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규정 신설	< 신 규 >	<ul> <li>소유자나 관리자가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·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</li> <li>등을 할 수 있는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규정 신설</li> </ul>	건축법 제35조의2 ('14.11.29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실내건축 관련기준 신설	< 신 규 >	<ul> <li>·건축물의 실내건축 시공 시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</li> <li>·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할 수 있도록 관련</li> <li>·기준 신설</li> </ul>	건축법 제52조의2 ('14.11.29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기준 신설	< 신 규 >	<ul> <li>●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,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 신설</li> </ul>	건축법 제53조의2 ('14.11.29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공작물 유지관리 의무규정 신설	< 신 규 >	●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의 유지·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의무 규정 신설	건축법 제83조제2항 ('14.11.29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오피스텔 분양면적 안목치수 적용	오피스텔 분양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중심선치수와 안목치수 혼용	●오피스텔 분양면적 산정기준을 안목치수 적용하도록 한 규정 신설	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('15년중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범위 완화	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20호실	•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30호실로 완화	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('15년중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	< 신 규 >	●냉방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 기준 근거조항 마련	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 2제1항, 제2항 ('15.5.28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	< 신 규 >	●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여 소 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 확인 가능	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5항, 제18조제1항, 제2항 ('15.5.28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	< 신 규 >	●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 ●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 가능	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 제2항, 제3항 ('15.5.28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녹색건축ㆍ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	< 신 규 >	<ul> <li>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시 녹색건축·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</li> <li>건축물대장 등에 표시(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)</li> </ul>	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('15.5.28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조성 등	< 신 규 >	<ul> <li>사업계획서 검토, 기술지원, 사업자 등록·관리·교육,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</li> <li>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</li> </ul>	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9조제1항, 제28조제1항 ('15.5.28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	<ul> <li>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운영</li> <li>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</li> </ul>	●민간자격 → 국가자격 ●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 등	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제1항 ('15.5.28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공동주택 필로티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가능	●공동주택 필로티 사용불가	<ul> <li>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공동시설로 증축 가능</li> <li>도서실(작은도서관 포함), 주민교육시설(비영리, 공동 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), 주민휴게시설, 독서실, 입주자집회소 등으로 사용(증축) 가능</li> </ul>	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제6호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 ('14.11.6.)	도시주택실 (주택정책과)
장수명 주택건설 기준 및 인증제도 마련	< 신 규 >	<ul> <li>구조적으로 내구성을 갖추고, 내부 구조에 대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인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마련</li> <li>인증제도에서 높은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, 높이제한 완화 가능</li> </ul>	주택법제21조의6 ('14.12.25.)	도시주택실 (주택정책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 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	<ul> <li>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가 의결하여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</li> </ul>	<ul> <li>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 ※ 다만,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2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서면동의한 연도에는 받지 않을 수 있음</li> <li>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300세대 미만인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1이상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</li> </ul>	주택법제45조의3 ('15.1.1.)	도시주택실 (주택정책과)
전자입찰 의무화	< 신 규 >	●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·용역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	주택법제43조제7항 주택법제45조제5항 ('15.1.1.)	도시주택실 (주택정책과)
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삭제	<ul> <li>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</li> <li>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</li> <li>규모별 비율 : 60㎡이하 규모의</li> <li>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20% 이상 확보</li> </ul>	●소형평형(60㎡이하) 주택 의무건설 비율 삭제	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제13조의3 제2항 개정 ('15.3.25.)	도시주택실 (도시재생과)
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개선	< 신 규 >	<ul> <li>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운송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장기 종사자는 면제 또는 격년제 교육으로 완화함</li> </ul>	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('15.1.1.)	교통국 (교통정책과)
전세버스 수급 조절 시행	< 신 규 >	<ul> <li>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한(금지)</li> <li>제한기간 : '14.12.1~'16.11.30(2년간)</li> </ul>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('14.12.1.)	교통국 (버스정책과)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b>근거</b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	< 신 규 >	<ul> <li>이용 대상 : 교통약자(여성, 노약자, 청소년 등)</li> <li>대상 구간 : 이면도로</li> <li>※ 임시정류소 지정 요건 : 어두운 곳 등 범죄취약 지역</li> <li>이용 방법 : 임시정류소에서 운전기사에게 하차요청</li> <li>운행 시간 : 밤 10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 시까지</li> </ul>	도 자체계획 ('15.1월)	교통국 (버스정책과)
택시 승차거부 3회시 면허취소	< 신 규 >	<ul> <li>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로 3회 적발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</li> <li>1회 : 사업일부정지 60일</li> <li>2회 : 감차명령</li> <li>3회 :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</li> </ul>	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('15.1.29.)	교통국 (택시정책과)



제목	신규및종전	달라지는 내용	<mark>근 거</mark> (시행일)	<b>해당실국</b> (부서명)
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	●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2년간 자체보관	<ul> <li>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은 자체점검(작동기능점검) 결과보고서를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</li> <li>- 공공기관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일 경우 적용</li> </ul>	「소방시설법 시행규칙」 [별표 1] <시행 '15.1.1.>	재난안전본부 (재난안전과)
공사현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의무	<신규>	<ul> <li>「소방시설법」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의 공사현장에는 임시 소방시설<sup>*</sup>을 설치해야 함</li> <li>*임시 소방시설 : 소화기, 간이 옥내소화전, 비상경보장치, 간이 피난유도선</li> </ul>	「소방시설법」제10조의2 <시행 '15.1.8.>	재난안전본부 (재난안전과)
소방안전보조 관리자 선임	<신규>	<ul> <li>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보조관리자를 선임함</li> <li>여면적 1만5천㎡ 이상인 경우 1만5천㎡ 마다,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 마다, 숙박·의료·노유자시설 등 야간·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보조관리자 선임</li> </ul>	「소방시설법」제41조 제20조 <시행 '15.1.8.>	재난안전본부 (재난안전과)